
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,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(안 제2조제1호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